

| 사회적 대화 현장_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 |

2019 최저임금 시급 8,350원 결정 과정

노사 대립각 와중 매년 반복되는 논의의 파행

박종훈 월간 <참여와혁신> 취재팀장

2019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정해졌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역시 논란의 연속이었다. 전년 대비 10.9% 인상 수준이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참여한 대립 가운데, 공익위원들의 손을 빌려(?) 간신히 결정되었다. 시한이 임박해 마라톤회의를 계속하거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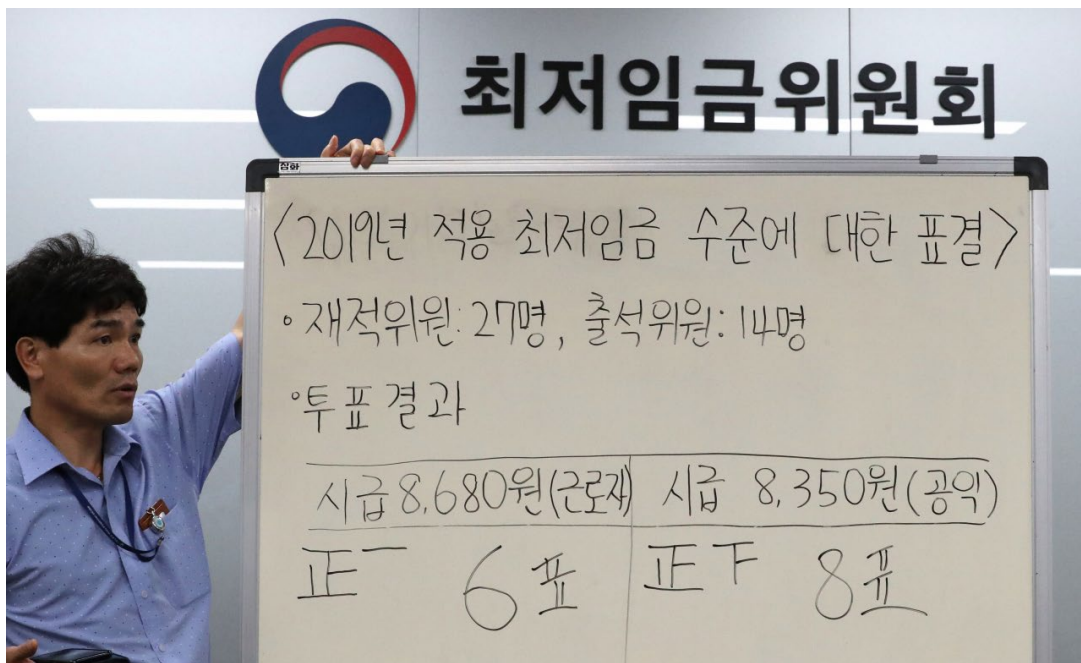
결정 과정에 대한 항의로 노-사 최저임금위원이 집단행동에 나선 경우도 있다. 올해의 논의 역시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퇴장 속에 결정됐다.

소득주도성장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에서의 두 번째 최저임금 논의는 인상수준과 함께 산입범위 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었나?

내년, 시급 8,350원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8,350원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된 금액이다. 구체적인 결정 근거는 2018년도 임금인상률 전망치(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 소득분배 개선분(4.9%),



협상배려분(1.2%) 등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후 유사근로자 임금 반영분 3.8%가 매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하는 금년도 임금인상 전망치라고 설명한다. 소득분배 개선분은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반영이다.

또한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보전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배려분 1.2%의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도입되었던 산출 근거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노사공 협상을 통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에서는 객관적 현실 지표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전분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협상조정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 경과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의 일정은 지난 3월 30일 최임위로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로 요청하는 절차이다.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고려, 저임금 근로자 소득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로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실질적인 첫 번째 전원회의는 5월 17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다. 11대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요청 이후 노사공익 실무자 7명으로 구성되는 연구위원회는 향후 운영일정이라든지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분석, 최저임금 실태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올해의 논의 과정에서 변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과 관련된 법 개정 논란이었다.

지난 2017년 말부터 최임위는 노사공 위원이 추천한 전문가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계속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 ‘병렬적’ 결론을 내렸다.

5월 24일과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최저임금 논의 불참을 선언한다.

이에 따라 6월 28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까지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채 진행된다. 최임위는 특히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조속한 회의 복귀를 촉구했으며,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는 외곽에서 투쟁을 계속한다.

한국노총은 7월 3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부터 다시 논의에 복귀하는데, 국회가 일방적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 표결이 진행될 경우 그 피해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업별 구분 적용안을 제출했으며, 노사 최초 제시안이 나온 것은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린 7월 5일에 이르러서였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안은 시급 10,790원, 사용자위원 제시안은 시급 7,530원이었다. 증감률로 보자면 노동계는 43.3% 인상(3,260원 증액), 경영계는 동결안이었다.

7월 10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결과는 14명이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향후 일정에 불참하게 된다.

이후 근로자위원의 제시안은 한 차례 수정된다. 시급 8,680원(24.3% 인상)으로 제시됐으며, 7월 14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제시안과 공익위원 제시안(시급 8,350원)을 두고 표결한 결과 8명 대 6명의 차이로 공익위원안이 가결된다.

최임위 위상과 결정 방식에 대한 고민 깊어져

매년 심의의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지만 올해의 최저임금 논의는 더욱 난항이었다. 우선 11대 위원 위촉이 이뤄진 첫 번째 전원회의의 개최가 예년과 비교해 볼 때 한 달 가량 늦었다.

게다가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된 5월 말부터는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6월 말까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운영이 계속된 것이다.

최임위는 이와 같은 “어려운 와중에도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예정된 현장방문을 모두 완료했고, 내실 있는 심의를 계속했다”며 “심의 결과는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해 불참으로 인한 논의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끝까지 불참한 점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8일까지 사실상 논의가 공백이었지만, 최임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심의를 7월 14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7월 들어 사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되면서 이번엔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하는 등 다시 어려움이 계속됐지만 기한은 맞추었다.

특히 산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실제 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 환노위 위원은 “국회 논의 중단이 언급된 시점에서 이를 다시 최임위로 결정을 넘기는 방안도 고려되었는데 최임위 차원에서, 특히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언급했다”며 “최임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니 노사정대표 자회의에서라도 무언가 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국회 안에서의 논의 과정에서는 여야가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함을 설명하면서, “마지노선이라도 노사 간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싶었지만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법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 여론에 대한 일종의 해명인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된 시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상폭에 대한 반발도 있다. 현재 경제상황과 고용지표, 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상률 10.9% 중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4.9%가 소득분배를 위한 인상 비중인데, 사회적 합의 절차를 외면하고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기 위한 무리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의 파행을 두고 우려를 보이는 이들도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수백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과 영세 사용자들의 이해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27명의 전체 최임위원 중 과반을 겨우 넘긴 14명의 표결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노사 간 일방의 집단 불참 등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니며, 향후에도 최임위의 위상과 결정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